전남북부권행정협의회운영규약

의안 번호	

제출년월일 : 1995. 5. 10.
제 출 자 : 화 순 군 수

1. 제안이유

○ 2개 이상의 자치단체에 관련된 행정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전남북부권행정협의회운영규약을 제정하려는 것임.

2. 제정근거

○ 지방자치법 제 142조 및 동법시행령 제 48조

3. 주요골자

가. 협의회 명칭 : 전남 북부권 행정협의회

나. 구성자치단체 : 나주시, 담양군, 화순군, 함평군, 영광군, 장성군 (6개시군)

다. 처리사무

1) 도시계획의 수립 및 변경시행

2) 주택단지 및 공업단지의 조성

3) 도로의 신설 및 개수.보수

4) 버스노선의 신설, 변경 및 폐지

5) 상.하수도시설의 설치

6) 환경오염 방지시설 및 감시에 관한 사항

7) 자원의 개발.이용 및 조사에 관한 사항

8) 기타 공공시설의 설치, 관리에 관한 사항

9) 제1호 내지 제8호외에 협의회의 협의를 거치는것이 바람직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
라. 조 직 : 회장 1인과 위원 5인, 자문위원 6인이상 12인 이하

○ 회 장 : 최초 회장은 나주시장이 되며 윤번제로 역임(임기 2년)

○ 자문위원 : 협의회의 승인을 얻어 회장이 위촉

• 의회의원 1인과 협의안건에 따라 수시 추가 위촉

마. 협의방법 : 협의안건 의결은 위원 전원 찬성으로 함.

바. 실무협의회

○ 관계 자치단체의 기획실장(기획담당관)과 안건 관련 국.과장을 위원으로 함.

○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안건중 경미한 사항은 실무협의회에서 처리

전남북부권행정협의회운영규약

제 1조(목적) 이 규약은 지방자치법 제 142조 및 동 법시행령 제 48조의 규정에 의하여 2개 이상의 자치단체에 관련된 행정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전남북부권행정협의회(이하 "협의회" 라 한다.) 를 구성하고 이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약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조(명칭) 본 행정협의회의 명칭은 전남북부권행정협의회라 칭한다.

제 3조(구성자치단체) 협의회를 구성하는 자치단체는 나주시, 담양군, 화순군, 함평군, 영광군, 장성군으로 한다.

제 4조(사무소 위치) 협의회 사무소는 회장이 속한 자치단체에 둔다.

제 5조(처리사무) 협의회는 관계자치단체간에 관련되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한다.

1. 도시계획의 수립 및 변경시행
2. 주택단지 및 공업단지의 조성
3. 도로의 신설 및 개수.보수
4. 버스노선의 신설, 변경 및 폐지
5. 상.하수도 시설의 설치
6. 환경오염 방지시설 및 감시에 관한 사항
7. 자원의 개발.이용 및 조사에 관한 사항
8. 기타 공공시설의 설치, 관리에 관한 사항
9. 제 1호 내지 제 8호외에 협의회의 협의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
제 6조(조직) ① 협의회는 회장 1인과 위원 5인으로 하고, 자문위원은 6인이상 12인 이하로 한다.

② 협의회의 위원은 나주시장, 담양군수, 화순군수, 영광군수, 장성군수로 한다.

③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장 1인과 협의회를 구성하는 각 자치단체에 간사와 전담직원을 두어야 한다.

제 7조(회장) ① 회장은 나주시장, 담양군수, 화순군수, 함평군수, 영광군수, 장성군수 순으로 윤번제로 하며 최초회장은 나주시장이 된다.

②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.

③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
④ 회장이 사고가 있을때는 회장이 속하는 자치단체의 그 대리인이 직무를 대행한다.

제 8조(자문위원) ① 제 6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자문위원은 협의회의 승인을 얻어 회장이 위촉하되, 협의회를 구성하는 각 자치단체의 의회에서 추천한 의회의원 1인과 협의안건에 따라 다음 각호의 자중에서 수시 추가하여 위촉 활용한다.

1. 국가의 특별행정기관의 장
2. 관련공공단체의 장 및 관계전문가
3. 지역실정에 밝고 주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덕망이 있는자 등

② 수시 위촉하는 자문위원은 당해 협의안건 의결과 동시에 자동 해촉된다.

제 9조(간사) ① 간사장은 회장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기획실장(기획담당관)이 되며 회장의 명을 받아 회운영의 기록관리 등 제반업무를 담당한다.

② 간사는 협의회구성 지방자치단체의 기획실장(기획담당관)이 되며, 회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담당한다.

제 10조(회의개최)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.

② 정기회는 연 2회로 하되 2월과 3월사이, 8월과 9월사이에 회장이 소집한다.

③ 임시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때에 소집하되, 협의회 위원의 요구가 있을때에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.

④ 회장은 회의가 있는 때마다 협의회의 안건을 준비하여 위원에게 미리 배포하여야 하며, 회의개최 후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.

⑤ 회장은 협의회 회의개최후 14일이내에 회의개최 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제 11조(협의결과 처리) 관계자치단체는 협의회에서 합의 결정된 사항은 그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.

제 12조(협의사항의 조정) 협의회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 14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도지사에게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.

제 13조(협의방법) ① 위원은 협의안건을 회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, 회장은 실무협의회의 사전검토를 거쳐 30일이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.

② 협의안건 의결은 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한다.

제 14조(실무협의회) ①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구성한다.

② 실무협의회는 관계자치단체의 기획실장(기획담당관)과 안건관련 국.과장을 위원으로 하며, 실무협의회 위원장은 협의안건의 실무 검토의견서를 협의회에 제출하고 협의회 개최시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.

③ 다만,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안건 중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은 실무협의회에서 처리할 수 있다.

④ 실무협의회 위원장은 회장이 속한 자치단체의 기획실장(기획담당관)이 된다.

제 15조(경비부담)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운영경비는 회의를 개최하는 시.군에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협의회에서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담할 수 있다.

제 16조(수당지급) 회의에 참석한 자문위원에게는 시.군 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자치단체에서 부담한다.

제 17조(보칙) 이 규약에서 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상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로 정한다.

부 칙

① (시행일) 이 규약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검 토 보 고 서

□ 제 목

전남 북부권 행정 협의회 운영 규약 (안)

□ 주요 내용

1. 구성 자치단체는 화순군, 나주시, 담양, 함평, 영광, 장성군으로 함 (안 제 3조)

2. 주요 처리 사무 (안 제 5조)
   - ○ 도시계획의 수립 및 변경 시행
   - ○ 주택단지 및 공업단지의 조성
   - ○ 도로의 신설 및 개보수
   - ○ 버스노선의 신설 변경 및 폐지
   - ○ 상하수도 시설의 설치
   - ○ 환경오염방지 시설에 관한 사항 등

3. 협의회 조직 (안 제 6, 7, 8조)
   - ○ 협의회는 회장 1인과 위원 5인 (5개 시장, 군수)
   - ○ 협의회장은 나주시장, 담양, 화순, 함평, 영광, 장성군수 순으로 윤번제로 하되, 최초 회장은 나주시장이 되며, 임기는 2년
   - ○ 협의사항에 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해 6인이상 12인 이하의 자문위원을 두되, 각 자치단체 의회의원 1인과 협의 안건에 따라 관계 전문가 등 위촉 활용

4. 협의회에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도지사에게 조정 요청 (안 제 12조)

5. 협의 안건 의결은 위원 전원 찬성 (안 제 13조)

□ 제정 이유 (필요성)

○ 본격적인 지방자치제 실시에 대비하고, 도시화 및 교통통신의 발달로 생활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도시계획 구역 범위 확장, 환경보존, 상.하수도 관리, 쓰레기 처리 등 행정구역을 초월한 광역행정 수요가 증가되는 현실에서,

○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의 관련된 행정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한 전남 북부권 행정협의회 구성운영에 따른 규약을 제정하기 위함.

□ 검토 결과 (의 견)

○ 전남 북부권 행정협의회 운영규약 (안) 은 지방자치법 제 142조 및 동법 시행령 제 48조의 규정에 근거를 두고 도에서 시달된 행정협의회 운영규약 준칙(안)과 해당 시군간 실무협의회를 거쳐 마련된 규약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.